국 문 운 송 약 관

(여 객 부 분)

秦 仁 海 運 有 限 公 司

목 차

제 1 조 적용범위

제 2 조 정의

제 3 조 운송계약의 성립

제 4 조 계약의 해제

제 5 조 운항의 취소 및 수하물 운임

제 6 조 승객운임 및 수하물 운임

제 7 조 승선권의 효력

제 8 조 적용기간 연장

제 9 조 취소 수수료

제 10 조 수하물

제 11 조 위탁수하물

제 12 조 당사의 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제 13 조 승객의 행위 등

제 14 조 고용인의 권리

제 15 조 약관조항의 효력

제 16 조 공고

제 17 조 준거법, 재판관할

운송약관

제1조 (적용범위) 본 운송약관은 秦仁海運有限公司(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승객 및 승객의 수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이하 “운송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조 (정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객”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의거 운송되는 자를 말하며 승객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수화물”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으로 건 승선승객에 의해 본선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3. “위탁수화물”이라 함은 승객의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당사가 수탁하는 수화물 또는 개인용품을 말한다.
4. “특수수화물”이라 함은 승객의 목적지까지의 수송을 당사가 수탁하는 부피가 큰 전기제품, 자전거 등을 말한다.
5. “휴대품”이라 함은 승객 자신이 선내에 반입한 수하물을 말한다.

제3조 (운송계약의 성립) 운송계약은 당사가 정한 운임 요율에 따른 승객운임을 당사가 수령하고 승선권을 발권한 때에 성립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승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과의 운송계약을 승선 전,후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운임을 환불하는 이외에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 관련 국가의 방역법 또는 유사법률이 정하는 전염병에 감염된 자.
2. 만취자, 약물중독자, 정신병자, 본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다른 승객을 방해하거나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본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 보호자의 서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여권, 비자 또는 관련국가의 기관에서 요청하는 여행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자.

제5조 (운항의 취소 및 변경)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된 항해를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착,발항 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승객에게 목적지가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선 시킬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나 경비에 대하여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1. 기상 또는 해상 상태가 본선의 항행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해난, 기관고장,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동맹파업 또는 노동쟁의가 있는 경우.
4. 승객이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5. 본선이 나포되거나 파괴되는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6. 관련정부나 관공서의 명령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7. 전쟁, 폭동 또는 정치소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전염병 또는 역병이 발생한 경우.

제6조 (승객운임 및 수하물 운임)

1. 승객의 운임은 별도의 당사 운임율 표에 의한다.
2. 본선의 선상에서 제공되는 식사, 음료 기타 서비스 등의 요금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운임할인 및 할증은 별첨 표1에 의한다.
4. 운임은 한화, 인민폐, 미화로 각각 징수할 수 있으며, 환율은 징수 일의 현찰 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5. 회사는 여객운임외에 터미널이용료 , 셔틀버스비용 , 출국세 등을 별도로 수취할 수 있다
6. 다인실을 개인전용으로 사용시 잔여좌석의 운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제7조 (승선권의 효력)

1. 승선권은 승선권에 기재된 지정 항차, 승선 구간, 선실 및 선석에 한하여 유효하며, 당사는 필요 시 선실 또는 선석을 변경할 수 있다.
2. 승선권은 승선권에 성명이 기재된 승객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승선할 항차와 선실이 지정되지 않은 승선권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승객은 항차 및 선실의 지정을 원할 시 늦어도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승선권의 기재사항이 승객에 의해 삭제되거나 변경될 경우 그 승선권은 무효가 된다.

5. 사술에 의하여 운임을 할인 또는 무임으로 승선할 경우 그 승선권은 무효가 된다.
6. 승선권 분실 시에는 늦어도 출발 1일 전 17시까지는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 발생 시 승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적용기간 연장) 승선권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다.

1. 선박이 운항 불능 시, 운항 불능케 되었을 때로부터 대선 또는 차선편 출항 시 까지.
2. 왕복 승선권을 소지한 승객이 질병, 부상, 기타 불가항력으로 여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적용기간 만료 일로부터 15일간.

제9조 (취소수수료)

1. 승객은 별첨 표2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운송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승객이 승선권의 지정일, 지정시간의 2시간 전까지 지정항구에서 승선하지 못하고 출항 후 2일 이전까지 환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운송계약이 승객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운임의 100%를 취소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제1,2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당사는 해당 선석을 재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 (수하물)

1. 승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25㎝ 이하의 휴대품 1개를 무임으로 직접 선내에 반입할 수 있다.
2. (1) 승객은 수하물을 2개까지(각각 25kg , 총중량 50kg까지) 목적지까지 무임으로 운송토록 당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전호의 중량 또는 개수를 초과하는 수하물 또는 제2조 4항의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별첨 표3의 당사 운임율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3. (1) 승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선에 반입하거나 당사에 위탁할 수 없다.
   (a) 악취가 나는 물품, 더러운 물품 또는 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물품.
   (b) 총기, 도검, 폭발물, 또는 승객, 기타 재산이나 본선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c)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의 사체 등.
   (d) 하선지의 법률에 의해 반입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하거나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e) 수화물 위탁장의 제한사항을 초과하는 물품 (중량,부피,길이 등)
   (2) 전호에 명시된 물품이 승선 전에 발견 될 경우 당사는 물품의 선내 반

입을 거절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필요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또는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승객이 제(1)호에 명시된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선장은 그러한 물품을 승객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양륙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물품을 반입함으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발생한 당사, 승객, 승조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물건을 반입한 승객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1) 당사는 본선의 불법 나포, 통제 또는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혹은 항행 보안상 또는 다른 사유로 다음과 같이 검사를 행할 수 있다.

(a) 승객의 의복을 접촉하거나 금속탐지기 , x -ray와 같은 기구에 의한 수하물 검사

(b) 승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개방검사에 의해 수하물을 검사

(2) 승객이 전호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필요한 협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당사는 수하물의 선내 반입을 거절하거나,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승객은 수하물을 항시 자신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수하물)

1. 당사는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수하물표를 교부하며, 수하물은 하선항에서 수하물표를 제시하는 자에게 인도된다.
2. 도착 후 3일까지 인수자가 없는 수하물은 관계 세관에 인도된다.

제12조 (당사의 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1. 당사는 승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당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조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승선항의 승선시설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선항의 승강시설을 떠날 때까지 여객이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해운법 제16조 제1항 제4조 규정에 의한 여객상해배상 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승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그 보관은 자신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 선내 규칙에 따라 그 고가품이 당사에 위탁되었을 경우 본조 타항의 적용을 받는다.
4. 당사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

도 1항해 당 승객1인에 대하여 1,200SDR, 1포장단위 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5. 본 조에 의한 당사의 배상액은 승객의 과실이 기여된 비율에 의하여 감액된다.

6. 이 약관에 규정된 타 규정에 불구하고:
   (1) 당사는 승객의 사망, 상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사실의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장,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점에게 통보되거나, 사실의 발생 1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당사는 승객의 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의 발견 직후, 또는 늦어도 승객의 하선 시까지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선장,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에게 통보되거나 하선 후 일주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당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당사는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1974 아테네 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승객의 행위 등)
1. 승객은 승,하선 기타 선내에서의 행동에 관하여 선장 또는 당사의 직원이 수송의 안전확보와 선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장은 운송계약을 해제하거나 선장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승객이 지정된 승선시간까지 승선치 않더라도 선장은 항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승객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승객은 승객 또는 승객이 동반한 소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야기된 당사 또는 타 승객 또는 타 승객의 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 승객은 출입국 관리, 검역, 세관 및 경찰 등에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규정, 통고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당사는 승객이 그러한 법령 등에 순응하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승객은 자신이 순응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인의 권리) 당사가 적용하게 될 모든 책임의 배제나 제한은 당사의 선

장, 대리점,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혜택을 받는다.

제15조 (약관조항의 효력)

1. 본 운송약관은 계약에 의해서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서든 승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모든 청구에 대해 적용한다.
2. 승객은 그의 법정 상속인, 수탁인 및 대리인도 본 운송약관의 조항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에 동의 한다.
3. 본 운송약관의 조항이 적용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4. 본 운송약관의 한국본과 기타 번역본이 상치할 경우, 본 한국본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6조 (공고) 당사가 당사의 사업에 관하여 홍보 또는 공고할 경우, 당사는 그 내용을 본선 , 당사의 사무실 및 대리점의 사무실에 게시하며, 게시 후 14일이 되면 일반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준거)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법 또는 한국법에 준거한다.

<표 1> 할인율

내용	할인율	비고
1. 학생	20%	학생증 소지자(만 30세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Economy등급에 한함)
2. 소아	50%	출항일 기준 만2세 이상 ~12세 미만
3. 유아	100%	출항일 기준 만2세 미만(1인 초과 시 소아요금 적용)
4. 선원	20%	Economy등급에 한하며 국제항행선박승선을 위해 출국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수첩 소지자
5. 신체장애자	20%	Economy등급에 한함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수첩 소지자)
6. 노인할인	20%	출항일 기준 만65세 이상(Economy등급에 한함)
7. 왕복할인	10%	왕복 선표 발급 시 할인
8. 국가 유공자 할인	20%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광주민주화유공자증 소지자(Economy등급에 한함)

다만, 선사의 객실사용 현황에 따라 할인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표 2> 취소에 따른 수수료율

⊙ 개인승객의 경우

a. 출항 1일 전 ---------- 판매금액의 10%
b. 출항 2시간 전 ---------- 판매금액의 10%
c. 출항 후 2일까지 ---------- 판매금액의 50%
d. 출항 후 3일부터 ---------- 판매금액의 100%

⊙ 단체승객의 경우

a. 단체별 계약사항에 따른다

<표 3> 수하물 요금

1. 규정부피를 초과하는 탁송수하물의 경우------ 10㎝ 초과시마다 US$5.00
2. 규정중량을 초과하는 탁송수하물의 경우------ 1kg 초과시마다 US$5.00
3. 특수수화물은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자전거 ---------- US$35/UNIT
   기타 가전제품 및 유사품목 ---------- 현장에서 조정

- 본 약관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적용한다.